가축분뇨 처리 지원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단체경상· 본보조
내역사업명	·가축분뇨 정화시설 지원(276)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277)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278)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280)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281)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장비 지원(282)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장비 지원(282) ·공동퇴비장(마을형 퇴비자원화)(283)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284) ·공동자원화 바이오가스연계 시설장비 지원(287) ·부숙도 판정기 지원(289) ·악취측정ICT기계장비(296) ·가축분뇨 퇴비·액비살포비 지원(297,318) ·액비유통전문조직(298) ·액비저장조 지원(299) ·퇴비부숙도판정지원(317) ·퇴비유통전문조직(319) ·퇴액비 성분분석기 지원(320)				예산 (백만원)		45,049
사업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 주요내용	○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기존 정화 시설 보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으 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						발전특별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9				생산자 단계	체, 농어입	법경영체법
					(Ę	<u></u>	만원/톤)_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지원한도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 $(x-x^1)(y^1-y^2)$			- /			
	$y = y^{1} - \frac{(x - x^{1})(y^{1} - y^{2})}{(x^{2} - x^{1})}$	y : 당해 시	-업비, y ¹	: 작은 시설	용량 단가, 	y ² : 큰 시	설용량 단가

<u>(단위 : 백만원/개소)</u>

							1			
	구	분	돼지] 한 -	ř.	젖 소	म्ब	닭 사	케이지	
	· 개 별 처 리 시설	개별농가	500	500 300 20			200			
	시설	법인체 등	2,000)	80	00		1,000		
	· 액비저장조 -		신규	20	(200톤	투 규모기준,	폭기.	교반 시설	포함)	
	77776-		개보~	È 9(2	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 액비유통경	선문조직			20)0(최초 지유	<u></u> 보시)			
	·마을형퇴터	비자원화				200				
	• 퇴비 • 액티	미살포비	[평가결피	가에 따라 사 <u></u>	計 え	200천원/h }등지원(평가	a 결과 등	: 세부내용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	분석기				37				
	• 액비부숙도	드판정기				30				
	·퇴비부숙도	E판정지원				<u>38</u>				
	• 휴대용 유히	가스측정기				1.2				
재원구성 (%)	국고	20~100	지방비	20~50	E	3자 20	~70	자부담	10~30	
							I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년	2018년	2018년 2019		년	202	:0년	
агн	합 계	179,9	962	153,86	5	133,0	133,606 1		154,444	
연도별 재정투입	국 고	43,2	223	36,90	8	35,0)50	45,049		
 현황	지방비	43,2	205	39,50	9	33,	162	39	,319	
	융 자	65,8	322	55,71	0	48,2	295	55	5,523	
	자부담	27,7	712	21,73	8	17,0)99	14	,553	
담당	남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락처				
농림축산식물 축산환경관리 농협경제지주	· 나리원, 축신		산환경자			사무관 정창남 044-201-2 주무관 박정미 044-201-2				
신청시기	정기(전년	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과 장 박홍식	044-201-235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정창남	044-201-2357
		주무관 박정미	044-201-2363

I. 사업개요

1. 목 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단위: 백만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7. [- [-]		1 1			(= 1	1 - 1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p)	2020(p)
합 계	134,436	206,406	154,170	153,865	133,606	159,688
국 고	42,708	49,760	43,150	36,908	35,050	50,293
융 자	44,968	70,030	65,822	55,710	48,295	55,523
지방비	38,990	56,234	33,591	39,509	33,162	39,319
자부담	7,770	30,382	11,607	21,738	17,099	14,553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사업 대상자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한빛복지협회 등),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 전문조직과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u>퇴액비품질관리지원(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u> : 시 ·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u>액</u>비유통전문조직 주체

-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u>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등)</u>,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u>퇴비유통전문조직(마을형퇴비자원</u>화사업에 한함)
- 퇴비·액비 살포비 : 퇴비(퇴비유통전문조직), 액비(액비유통전문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
 -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이하 [별표6] 적용)
 - * 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실적 범위를 축산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퇴비 생산·판매. 환경시설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 사업자 선정계획에 별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 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돼지, 한우, 젖소, 닭, 오리)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별지 제22호 서식]

- 개별처리시설
 -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악취저감시설은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을 지원(1순위)하고 개별농가를 대상 으로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등 지원(2순위)
 -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를 운영하는 조직
 -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지침은 별도 시달(<u>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개별처리지원사업 5,000만원(총사업비 기준)은 사후관리를</u>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 공동자위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바이오가스연계: 기존 공동자원화(퇴액비화) 시설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추가로 설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마을형 퇴비자원화 :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 <u>에너지화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의 경우</u>,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5년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 한함

※ 공동자원화 사업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단, 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공동자원화 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액비저장조

- <u>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서</u>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u>액비유통전문조직과</u>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u>액비유통전문조직</u>과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액비유통전문조직

- ①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하고 연간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어야 함
- ② 액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 (신규 전문조직은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 ④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⑤ 사업주관기관은 <u>액비유통전문조직</u>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 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u>전문조직명</u>, 전화 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퇴비유통전문조직

- ① 축산농가 4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이상 및 퇴비 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100ha이상 확보하여야 함(시군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② <u>퇴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퇴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u>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 ('20년도 사업자는 동 시스템 구축 이후 관리)

④ 사업주관기관은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퇴비살포비를 지원 받는 가축분뇨 및 퇴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 번호, 소유주 등) 부착 할 것

○ 퇴비·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퇴비·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 퇴비·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 ①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 ②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 ③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사업별 지원내용 및 자금 용도

○ 개별처리시설

- 퇴·액비화시설: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u>정화시설(낙농 세정수정화시설 포함)</u>: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수 있는 시설 등
-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부대기계·장비: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 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장치와 설비), 정화방류수 탈색 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스키드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 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광역축산악취개선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마을형퇴비자원화 : 퇴비화시설(퇴비사, 건조장) 및 악취저감시설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 로더 등 차량 제외),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바이오가스 이용설비(가스포집장치, 정제설비 등), 열병합발전기 등
-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 되는 제반비용 포함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 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 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 조직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전문조직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 개보수 지원단가 초과 부분은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전문조직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 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u>퇴비</u>·액비살포비 : 퇴비·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 퇴비살포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 발급 적용시점은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퇴비부숙도판정지원 : 퇴비 부숙도 판정에 필요한 장비 및 인건비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처리시설	20	20	60	_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40	30		30	10년(3년 거치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마을형 퇴비자원화 - 에너지화	40 40 40 50	30 30 30 30 20	30 30 30 30 20	- - - 10	7년 균분상환), 연 2.0%(만)업등 3%)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전문조직	30	50	_	20	
퇴비·액비 살포비	50	50	_	_	
액비성분분석기	50	50	_	_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_	_	
퇴비부숙도판정지원	50	50	-	_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_	_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 개별처리시설 사업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처리시설은 다음 축종별 축사 m'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천원/m²)

축 종	돼 지	한 • 육우	정소	Ę	†
<u> </u>	돼 지	∦ 지 │ 한·육우 │ 젖 소	英 至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 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⑤ 201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 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⑥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 ⑦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⑧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재 산정하며, 개별처리시설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

(단위:백만원/톤)

					(= ., .	<u>, </u>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y=y^1-rac{(x-x^1)(y^1-y^2)}{(x^2-x^1)}$ x: 당해 시설용량, $x^1:$ 작은 시설용량, $x^2:$ 큰 시설용량 y: 당해 사업비, $y^1:$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큰 시설용량 단가

(단위:백만원/개소)

					(6.11	<u>· 학단편/계조/</u>	
구	분	돼지	한 우	젖 소	닭		
•		, ,			평사	케이지	
• 개별처리	개별농가	500	30	00	2	200	
시설	법인체 등	2,000	80	00	1,	000	
• 액비저장?	z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	설 포함)	
• 4 H \ \ \ \ \ \ \ \ \ \ \ \ \ \ \ \ \ \	11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	슬러지 제거!	비용 포함)	
• 액비유통	전문조직	200(최초 지원시)					
• 마을형퇴1	비자원화	원화 200					
· 퇴비 · 액비살포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자라 사업비 치	200천원/ha 등지원(평가 점	결과 등 세부나	용 별도 통보)]	
• 액비성분	분석기	37					
• 액비부숙!	도판정기	판정기 30					
· 퇴비부숙!	도판정지원	<u> 38</u>					
• 휴대용 유하	채가스측정기			1.2			

-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u>다만 지역</u> 여건상 퇴비화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 지자체 정책으로 매입·폐업·이전이 결정된 농가·단지는 지원 제외

- ⑥ <u>액비유통전문조직</u>은 기 지원 전문조직(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 자원화조직체를 점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 및 개보수비 (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비를 기 지원받은 경우라도 개소당 5년 누계 5억원 한도 내에서 이중지원 가능)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⑦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축종별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및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을 별도 적용 할 수 있음
- ⑧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지원 한도액: 개보수 사업자 선정 후 5년 누계 5억원/개소당 이내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 지사가 지정)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 식품부에 신청
-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u>바이오가스연계</u>,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2개 이상 시·군이 참여 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 내용 첨부). 시·도는 자체 검토 및 평가 후 유 형별(①퇴·액비화. ②바이오가스연계. ③에너지화)로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현장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후 농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시군의 의견, 2개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u>바이오가스연계</u>, 에너지화, <u>마을형퇴비자원화</u>)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 (에너지화·<u>바이오가스연계</u>)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마을형퇴비자원화) 마을내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계획 및 공동 퇴비장 이용계획 등 퇴비 부숙관리 계획
 - * 평가항목: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 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환경부서와 협의자료, 시·군간 협의자료,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등

- ⇒ 공동자원화사업자, 마을형퇴비자원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 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액비유통전문조직·퇴액비품질관리지원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 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퇴비·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①개별처리시설: 시·도(시·군)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친환경 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 2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과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전문조직),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전문조직),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전문조직)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 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 계획의 검토를 받아야 함)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2억원 이상의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 개보수, <u>마을형퇴비 자원화</u>, 액비저장조 설치(개보수 포함)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수립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필요성, 적정용량, 처리방법 등) 의견을 받아야 함(다만, 2억원 이하도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3개월이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 및 차순위 희망자로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음
 -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u>축산</u> 환경관리원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면제를 즉시 통보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을 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 시·군일 경우 시·군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액비유통전문조직·퇴액비품질관리지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 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약칭: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최소 3개월 이상 : 시험가동 2개월 이상, 정상가동 1개월 이상)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에너지화시설 및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의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 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 하도록 함.(퇴·액비화시설의 경우 준공 후 사업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공법사에 1년 이상 위탁·관리 후 운영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 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착공・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공사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i)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한 후 ii)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iii)사업주관기관이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 · 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 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설계>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 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착공・시공>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 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 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 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현지 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 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u>'20년 8월말</u>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 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 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가 축 분 뇨 처 리 시 설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사업완료(준공)후 15년	○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급 관한 35조	

O 보고

보고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고
○ <u>2021년</u>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u>2020</u> .3.31 한		
○ <u>2020년</u>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u>2021</u> .1.05한	시·군(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 회계연도 정산 보고	<u>2021</u> .3.05한	→ 시·도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u>2019년</u>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u>2020</u> .3.15한	(농식품부)	* 서식은 별도 통보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u>2020</u> .12.31한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 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 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가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u>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u> 등 법률 위반으로 <u>징역, 벌금, 과태료</u>,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 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u>퇴비('20.3.25. 적용)</u>·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 시설 사업 참여 제한
 -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2년부터 적용

7. 성과측정단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공공처리물량(환경부), 액비사용량 및 부산물 비료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u>공동자원화,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u> 점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점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점검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

- 점검대상 : 정부지원 <u>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u>

- 점검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u>퇴비·</u>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퇴비·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전문조직, <u>퇴비유통전문조직)</u>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 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u>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u> 선정한 후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운 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u>유통전문조직</u>을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 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u>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u> 전문조직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 (부숙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u>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u> <u>조직</u>의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 (예산 등 자체 부담)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u>2020년</u>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u>2021년도</u>의 사업 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0.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u>2021</u>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0, 4월)

2. 기타 사항(예고)

- 개별처리시설(총 사업비 2억원 이상)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u>'20년</u>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 시켜야만 지원가능('20년 시범사업 후 '21년 추진 검토)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개별처리시설)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
-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단,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완료를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 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22년부터 적용, 단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지원 사업은 '21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액비부숙도 '19.3.25일부터 전체 농가로 확대 적용, 퇴비부숙도 '20.3.25일부터 적용)
- '21년도 공동자원화사업 신규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 대상자는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사업자 신청할 것
- '20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1년 예산배정 및 교부